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판매업체 이용약관서

본인은 e커머스마켓에서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판매함에 따라 취득한 정산금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팩토링 서비스(이하 "팩토링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귀행과 _____ (이하 "중심업체") 및 PG사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 및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기본약관」(이하 "팩토링 기본 약관"이라 함)에 기초하여 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함)을 체결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팩토링 기본 약관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2조(업무절차)

판매업체는 아래 업무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 ① 판매업체는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매체 및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서명으로 본 약정을 체결합니다.
- ② 판매업체는 중심업체가 은행에 통지한 대상 정산채권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에 팩토링 신청을 합니다.
- ③ 은행은 중심업체의 승낙에 근거하여 제9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팩토링 이자를 선취 후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대금을 입금합니다.
- ④ 은행과 중심업체간 합의한 특정 조건의 판매업체는 은행 영업점에서 본 약정을 체결하거나 팩토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약정의 내용 중 성질상 적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팩토링 신청 및 실행)

- ① 판매업체는 본 약정 체결 이후 대상 정산채권에 한하여 팩토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판매업체는 대상 정산채권의 정산일 직전 은행 영업일까지로 팩토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팩토링 실행시 정산채권 정산일(정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도래하는 첫 은행영업일)까지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입금합니다.
- ④ 은행은 팩토링 신청 및 팩토링 실행의 결과를 판매업체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자동선정산 신청)

- ① 판매업체는 개별 팩토링 실행요청 없이, 중심업체가 은행에 통지한 정산채권을 자동으로 팩토링 실행하는 자동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선정산 서비스는 판매업체의 별도 신청에 따라 적용되며, 자동선정산 서비스의 이용신청 및 해지는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제5조(판매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 부존재)

은행은 팩토링 실행 이후 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6조(팩토링 서비스 대상 판매업체의 범위)

- ① 은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중심업체와 거래 또는 거래 예정인 판매업체
 2.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판매업체
 3. 중심업체가 은행에 팩토링 대상 업체로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한 판매업체
 4. 중심업체로부터 정산대금을 받는 계좌가 제9조의 입금계좌와 동일한 판매업체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중심업체는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제한) 판매업체를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별도 안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약정 및 팩토링 실행 제한사유)

- ① 은행은 팩토링 기본약관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약정을 제한하거나 팩토링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판매업체가 제6조의 요건을 갖추고 팩토링 기본약관 제6조에서 정하는 팩토링 실행 제한사유가 없거나 해소된 경우 판매업체가 신청한 팩토링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제8조(팩토링 신청 취소)

- ① 은행이 팩토링 실행을 완료하여 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판매업체는 정산채권의 환매 신청(팩토링 실행취소)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이 팩토링 실행을 완료하여 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기 전에 판매업체는 정산채권의 환매 신청(팩토링 실행취소)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팩토링 실행이 취소된 경우 은행은 즉시 중심업체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9조(입금계좌 지정)

팩토링 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의 하나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제10조(팩토링 이자율 및 이자)

- ① 팩토링 이자율은 은행과 중심업체간 협약에 따라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팩토링 실행에 따른 팩토링 이자는 판매업체가 부담합니다.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 ☐ 기타 ()
--

- ② 제1항의 팩토링 이자는 은행과 중심업체간 약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은 그 변경된 금리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이자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금리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④ 이자 계산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이자는 팩토링 실행시 정산일까지 계산하여 일괄 선취합니다. 단, 정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도래하는 첫 은행영업일까지 계산하여 선취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동의)

- ① 판매업체는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중심업체에게 판매업체의 사업자정보 및 약정정보, 팩토링 실행 내역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② 중심업체가 정산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PG사에 일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은행이 PG사에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제12조(약정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정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지됩니다.
1. 판매업체가 은행에 본 약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판매업체와 중심업체간 마켓 이용계약이 해지(마켓 이용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중심업체가 그 사실을 은행에 통지한 경우
 3. 판매업체가 팩토링 신청을 한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상 신규로 팩토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4. 중심업체 이용약정서가 해지,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는 경우
- ② 판매업체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해지신청을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은행은 즉시 중심업체에 대해 본 약정에 따른 채권양도가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약정 해지가 예상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판매업체에게 본 약정의 해지 예정 사실을 안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사유로 중심업체 이용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은행은 본 약정의 해지 사실을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약정기한 및 효력)

- ① 본 약정의 기한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② 본 약정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판매업체의 팩토링채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팩토링채권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본 약정의 효력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준거법)

- ① 은행과 판매업체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정, 팩토링 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팩토링 기본약관의 순서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5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합의)

본 약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약정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본 약정을 체결합니다.	본인	(인)
--	----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